

#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 정 2021.02.08.

개 정 2024.02.23.

##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탁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규약 제7장, 사무국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사무국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운영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직원의 채용방법 및 절차의 결정
3. 직원의 승진 및 직권면직 여부 결정 <개정 2024.2.23.>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의 결정 <개정 2024.2.23.>
5. 인사고과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 및 결정
6.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2. 위 원 5인 이내(위원장 포함)
  3. 간 사 1인
- ②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정하고, 외부인사 2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2.23.>
- ③ 위원의 유고시에는 본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4.2.23.>
- ④ 간사는 사무국 직원 중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2.23.>

##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6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존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장은 위원이 해촉 된 경우 이를 즉시 본 협회에 보고한다.

**제8조(기밀유지)** 위원회는 엄정중립과 공명正大하게 회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본 협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원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3.>

-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직권면직과 관련된 심의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제11조(증언 및 방증)** 위원장은 부의사항에 관한 증언을 듣거나 방증을 수집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제3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12조(의결의 효력)**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의결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승인 요청시에는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의사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사후에 사무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부의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본 협회에서 관장한다.

부 칙 (2021. 2. 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날부터 시작된다.

부 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날부터 시작된다.